

#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은경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9-119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3. 2. 3.

발의자 : 박은경 의원 외 11인

## 1. 제안이유
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결정(안 제3조 ~ 제4조)
- 지원 방법 및 지원항목(안 제5조)
-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(안 제6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2

## 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

## 6.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2. 3. ~ 2. 6.(3일간)

## 7. 부서검토의견 : 붙임4

## 【붙임1】 제정조례안

###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필요비용” 이란 난방비, 생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
- “지원” 이란 필요비용, 현물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 대상자의 범위)** 저소득주민의 범위 및 지원 대상자는 안산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
-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4조(지원 대상자의 결정)**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. 다만,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실제 거주지를 조사·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 방법 및 지원항목)** ① 지원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, 물품,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.

1. 생계비
2. 난방비
3. 전기 요금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)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 기간, 지원 수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| 소 관         |       | 안산시의회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시 의 원 | 박은경 의원<br>대표발의<br>(행정 3577) |